경기도 공고 제2022-1405호

2022년 소방공무원 소방장·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 소방장·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1일

경 기 도 지 사

Ⅰ. 시험개요

1 시험일정

원서접수	필기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7. 18.(월) ~ 7. 21.(목)	**9. 3.(토)**	**9. 21.(수)**
119고시 누리집 (http://119gosi.kr)	8. 24.(수) 장소 공고 (https://119.gg.go.kr)	119고시·소방청 누리집

※ 상기 시험일정은 내·외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7일 전 공고)

2 승진예정인원

계	소방장	소방교
190	63	127

※ 소방장·교 승진시험 승진예정인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

3 응시자격

가.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30조를 충족한 사람

※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: '22. 8. 31.(시행규칙 제3조)

나. 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

Ⅱ. 원서접수 등

1 원서접수 (원서접수는 119고시에서만 가능)

가. 대 상 자: 소방장 · 교 승진시험 응시자

나. 접수기간: 7. 18.(월) 10:00 ~ 7. 21.(목) 18:00
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,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

다. 접수방법: 119고시 누리집(http://119gosi.kr)

라. 접수확인: 119고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(소속, 이름, 임용일자 등)

☑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사진기준: 반명함(3㎝×4㎝), 사진 파일(JPG, GIF, PNG, DMP), 해상도(100DPI 이상)
- 사진등록: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* 등록 시 불이익 발생
  *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, 동물·식물 사진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(허위 작성, 오기, 누락), 연락 불능, 시험승진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2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번호 부여

가. 원서접수 결과 공개

1) 일 자: 7. 25.(월) 14:00

2) 내 용: 지역별, 계급별 접수 현황

3) 공개방법: 소방청에서 시도에 공문 발송 또는 119고시 공고

4) 공개대상: 소방장 · 교 승진시험 대상자

나. 응시번호 부여

1) 부여일시: 8. 5.(금)까지 / 119고시

2) 부여방법: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않도록 혼합

3) 번호공개: 응시표 교부 전까지 비공개 처리

4) 부여방법: 8자리(1122 **시도 · 성별 · 계급** - 1234 **순번**)

3 응시표 발급(출력)

가. 발급일자: 8. 24.(수) 14:00부터

나. 발급방법: 응시자가 119고시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

다. 발급절차: 119고시 접속 → 마이페이지 → 응시표 출력

라. 확인방법: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응시표 사진과 응시자 대면 확인

※ 승진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소지할 것

Ⅲ. 필기시험

1 필기시험 (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)

가. 시험일시: 9. 3.(토) 10:00 ~ 11:15(75분) **※ 09:30분까지 입실 완료**

나. 시험장소: 8. 24.(수) 별도 공고(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)

※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가능(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)

다. 시험방법: 제1차 시험(선택형 필기시험)

라. 시험과목: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」 별표8 참고

구분	과목 수	문항 수	시험과목		
소방장	3	75	소방법령Ⅱ	소방법령Ⅲ	소방전술
소방교	3	75	소방법령Ⅰ	소방법령Ⅱ	소방전술

1. 소방법령Ⅰ: 소방공무원법(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소방공무원법, 소방공무원임용령,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, 공무원고충처리규정, 공무원보수규정,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, 소방공무원 복무규정,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,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, 소방공무원 징계령, 소방공무원 기장령

2. 소방법령Ⅱ: 소방기본법,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3. 소방법령Ⅲ: 위험물안전관리법,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4. 소 방 전 술: 화재·구조·구급·소방차량 정비실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·기술 및 기법 등

※ 소방법령 문제는 필기시험일(2022.9.3.)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

마. 준 비 물: 응시표, 신분증*, 필기구(컴퓨터용 흑색 사인펜)

*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기간만료 전),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

2 문제문의 운영(소방청 주관)

가. 기　　간: 9. 3.(토) 16:00 ~ 9. 4.(일) 24:00

나. 방　　법: 119고시 누리집에서 신청

다. 자격요건: 승진시험 응시자만 가능

라. 내　　용: 출제문제 오류, 복수정답, 정답없음 등 문의

마. 절　　차: 로그인 → 질의응답 → 필기시험 문의 → 문의서 첨부

※ 응시자는 승진시험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(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)

3 최종 합격자 공고

가. 일시/대상: 9. 21.(수) 14:00 / 소방장・교

나. 공고방법: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

다. 공고내용: 최종합격자 명단, 출제문제 문의결과 공고

합격자 결정 ※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

- 합격기준: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- 최종합격자: 필기시험 성적(60%)와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(40%)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*에 의해 결정

  *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- 동점자 순위 결정

 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

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
 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

 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

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

- 공개기간: **9. 22(목) 16:00 ~ 9. 23.(금) 18:00**
- 공개대상: 소방장・교
- 문의기관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
- 공개방법: 119고시(접속 → 성적조회→ 본인인증 → 응시번호)

Ⅳ. 기타 안내사항

1 일반사항

가. **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
☑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

- 인 정: 소방공무원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
- 불인정: 자격수첩,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, 신분증 사진

※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.

나. 응시자는 본인의 지정 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**다른 지역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**합니다.

다. 응시자는 공고문에 **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**하여야 하며(이후 입장 불가),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**응시 포기로 간주**합니다.

☑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(예시)

- 시간 기준: 10:00 시험은 08:30에 개방하여 09:30:00까지 입장 가능
  09:30: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
- 입구 기준: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

※ 시험장 개방시간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문 참고

라.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**시험실시일 7일 전**까지 소방청 119고시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공고합니다.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(시험일시, 장소 등)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

마. 모든 시험은 우천, 폭설,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, **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**합니다.

바.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,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,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.

사. **응시자격 요건**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**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**될 수 있으며, 책상, 벽 등에 필기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

가. 응시자는 **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**하고 지정된 좌석(시험장소 및 시험실)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.

☑ 시험장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, 교통편,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.
-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.

나. **원서접수 후 개명**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**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**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**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**에 따르며,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.

라. 답안은 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**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**할 수 있습니다.

1)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**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
2) **불량 수정테이프**의 사용 또는 **불완전한 수정처리**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**본인에게 책임**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☑ 채점오류(귀책 사유) 사례

-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
-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
- 답안지 여백 낙서,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
-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
-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(연필, 샤프, 적색펜 등) 사용한 경우
-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
-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 ▮▮▮)를 훼손한 경우
-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.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

마. 답안지는 본인의 **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) **(필적감정용 기재)**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
2) **(자필성명)**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.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) **(교체답안지 작성)**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, 자필성명, 응시번호,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(표기)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**1인 1매만 유효**합니다.

바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**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**됩니다.

1) 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, PDA, 스마트워치, 전자계산기, 전산기기, 테블릿 PC 등

2)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(off)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.

사. 문제지 배부 후 **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**하는 행위, **시험 종료 후**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**답안지를 작성**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응시자는 문제지의 **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.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. **시험시간 관리**의 책임은 전적으로 **응시자 본인**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차. 시험시간 중에는 **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카.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**5년간 공무원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**됩니다.

타.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번호, 시험감독관 서명,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**무효답안으로 처리**합니다.

☑ 유사답안처리 및 무효답안처리 기준

- 부정행위자 조치: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51조 준용
- 유사답안의 처리:「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3조 적용
- 무효답안처리:「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」제24조 적용
- 「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」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준

■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(제24조제5항)

- 시험지(문제지, 답안지)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파.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(본인)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**별도 시험장에서 시험**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 ※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【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】

1. **(대 상)** 승진시험 응시자 **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람**
   -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*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
     * 자가격리자: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
   - ②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
2. **(신청기간)** 2022. 9. 2.(금) 18: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3. **(신청방법)**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 유선통보(031-329-0321~5) 및 e-메일 제출(bbankar@korea.kr)
4. **(제출서류)**
   - ① (공통)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【서식 3】
   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【서식 4】
   - ③ 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자	①, ②	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		

5. **(시험안내)**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
6. **(유의사항)**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허위 검사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☑ 문의전화

평일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제외)

- **시험문의: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(044-205-)**
  - 시험공고(7288), 원서접수(7290), 필기시험(7294), 문제문의(7291)
- **기타 문의사항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, 031-329-0321~5**
- **원서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: SE코리아, 070-4290-9611**

붙임 1 소방전술 출제범위 (승진시험 시행요강 - 별표 1)

분 야	출제범위	비고
화재 분야	- 화재의 의의 및 성상	
	- 화재진압의 의의	
	-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	
	- 화재진압 전술	
	-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	
	-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	
	-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화재분야)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- 안전관리의 기본	
	- 소방활동 안전관리	
	- 재해의 원인, 예방 및 조사	
	- 안전 교육	
	- 소화약제 및 연소.폭발이론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-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- 화재조사실무(관계법령 포함)	
구조 분야	- 구조개론	
	- 구조활동의 전개요령	
	- 군중통제, 구조장비개론, 구조장비 조작	
	- 기본구조훈련(로프, 확보, 하강, 등반, 도하 등)	
	- 응용구조훈련	
	- 일반(전문) 구조활동(기술)	
	-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(구조분야)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	-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	
	-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	
	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	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구급 분야	- 응급의료 개론	
	- 응급의학 총론	
	- 응급의료장비 운영	
	- 심폐정지, 순환부전, 의식장해, 출혈, 일반외상, 두부 및 경추손상, 기도.소화관이물, 대상이상, 체온이상, 감염증, 면역부전, 급성복통, 화학손상, 산부인과질환, 신생아질환, 정신장해, 창상	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
소방차량 정비실무	- 소방자동차 일반	
	- 소방자동차 점검·정비	
	-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	
	- 고가·굴절 사다리차	

※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**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**로 한다.

붙임 2 응시자 디지털 식별코드 확인 방법

□ e-사람 시스템 접속 → 나의이력 → 인사요약카드 → 코드확인

e-사람시스템
접속
↓
나의이력 클릭
↓
인사요약카드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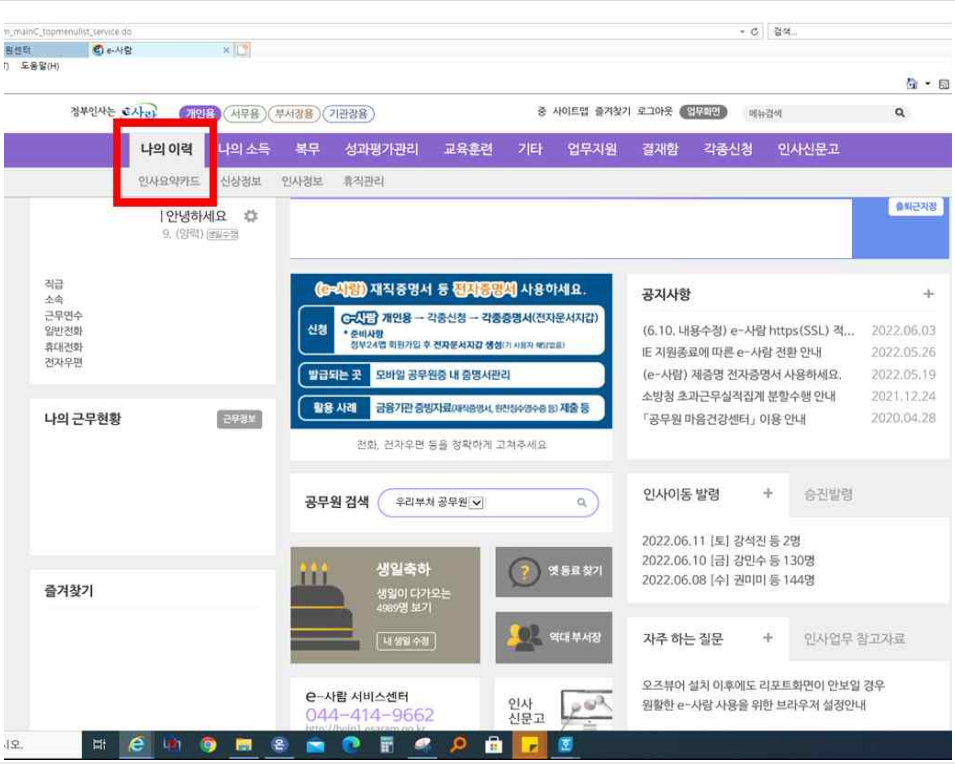

▼

디지털식별코드
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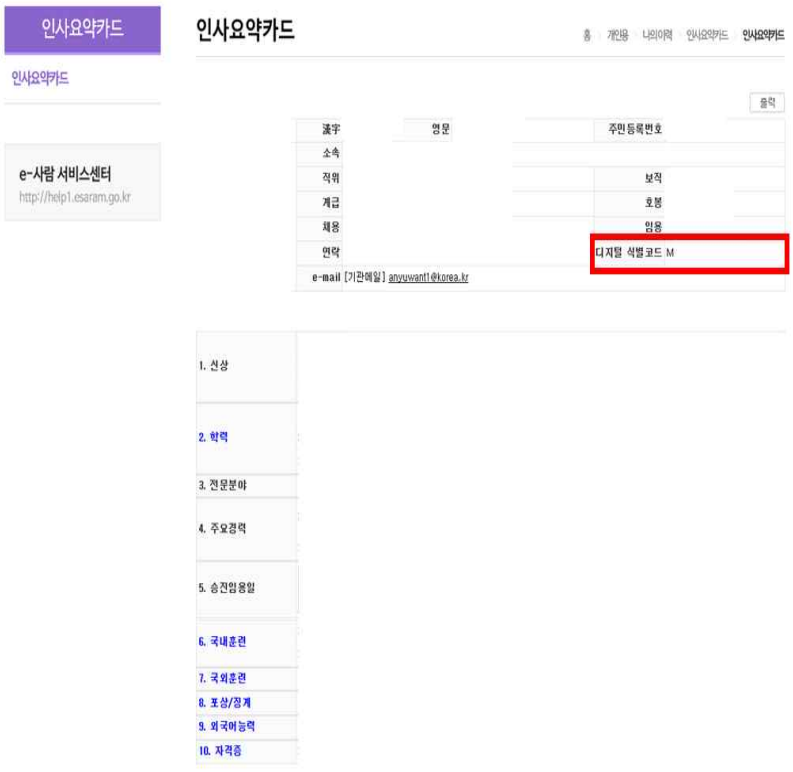

【서식 1】

필기시험 문제문의서

문 제 문 의	성 명		응시번호	
연 락 처	휴 대 전 화			
	전 자 우 편			
응 시 분 야	응 시 시 도			
	응 시 분 야			
문 의 과 목	해 당 과 목			
	문 항 번 호	번		

<출제문제>

<사유 및 관련근거> -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

<응시자 의견>

【서식 2】

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

1. 접수자 인적사항

시 험 명		응 시 계 급	
성 명		응 시 번 호	
전 화 번 호		휴 대 전 화	

2. 정정 신청 내용

구 분	정정 전	정정 후
성 명		
주 민 등 록 번 호		

3. 정정 사유

4. 첨부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

(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)

2022년 월 일

신청자: 서명 또는 인

소방청장 귀하

【서식 3】

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

□ 인적사항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휴대전화	- -	응 시 번 호	
현 주소지			
격리 기간		관할 보건소 (담당부서 및 연락처)	
신청사유			

□ 제출 서류

※ 서류 제출현황 (제출시 □에 'V' 체크)

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□ (공통)

②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□ (공통)

③ 의사 소견서(병원입원·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) □

구 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확진(재택치료)	①, ②	1.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.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
확진(병원·생활치료)	①, ②, ③	
자가격리	①, ②	
※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) 양성이고,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, ② 서류 제출		

※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별도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자 서명 또는 인

경기도지사 귀하

【서식 4】

개인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서(별도 시험용)

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기본 개인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	성명, 휴대전화, 주소, 주민등록번호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,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기본 개인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교유식별정보 항목	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,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

수집하는 교유식별정보 항목	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,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질병관리청, 관할 보건소 등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응시자 확진·자가격리 여부 확인
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5년
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.

개인정보 제3자 제공, 기본개인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·활용 동의 여부 **동의 □ 미동의 □**

■ 개인정보 취급자

소속	직급	성명	연락처	이메일	개인정보보호 책 임 자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